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검토보고

I. 주요내용

-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지방 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할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1항제3호).
-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0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 조합에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(안 제46조제8항).

Ⅱ. 검토의견

○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병섭)